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

평등을 일상으로

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

2018. 12. 20

여성가족부

목 차

Ⅰ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····· 1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····· 3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 ····· 4

1. 2019년 역점 과제 ····· 4

①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

②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

③ 청소년 보호·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

2. 쟁점 과제 ····· 13

① 20·30 청년이 만드는 성평등 문화 및 정책 혁신

3. 신규 발굴 과제 ····· 16

①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····· 19

【별첨】 국정과제 추진현황

Ⅰ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◈ **'여성폭력'**에 **범정부**가 **합동 대응**하여 **문제 해결력**을 높이고, **피해자 지원**을 **강화**
◈ **양육비 이행**과 자녀 **돌봄 지원 확대**로 다양한 가족들의 **양육부담**을 **완화**

□ 여성폭력 관련 법·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로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

○ 폭력 **피해유형**에 따른 **지원**을 통해 **피해구제의 실질적 효과 창출**

① (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) 체계적인 사건처리시스템을 **마련**하여 **피해자 보호·지원**

- 공공·민간·교육·문화예술 등 분야별 '**신고센터**'를 통해('18.3월) **신고·상담 활성화**
-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유예하고,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적극 적용하여 **2차 피해 방지**
- 심리치료·소송지원 등 **사례별 맞춤형 집중지원**으로 피해자 일상생활 유지 지원
- 가해자 **처벌의 법정형과 징계수위를 높여** 경각심 제고

< 직장 내 공정한 사건처리 성과 사례 >

…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C씨는 담당팀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사건무마를 시도했다. 그러나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담당팀장은 징계 조치 됐고 가해자 역시 해임됐다. …

② (디지털 성범죄)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**유포차단 및 삭제지원**

- 채증 및 방심위 심의 요청, 사이트 삭제 요청 등을 정부가 직접 지원
  * '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' 운영('18.4월)
- 해외에 서버가 있는 **음란물 유통사이트 접속을 차단** (150개, '18.10월 기준)하고, **심의기간**을 **단축**(11일 → 3일)
-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**처벌 강화** (성폭력처벌법 개정, '18.12월)

<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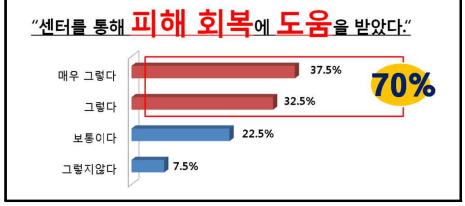

③ (스토킹·데이트폭력, 가정폭력) 일상적 폭력으로부터 **안전 강화**

- **(스토킹·데이트폭력)** 112신고 시스템에 **스토킹 코드 신설, 긴급피난처 일시보호** 지원
- **(가정폭력) 피해자 보호·지원**과 **가해자 처벌** 강화
  - **현행범 체포**를 통한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, 접근금지 등 **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** 부과
  -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**퇴소 시 자립지원금** 지원, **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**
  - 가정폭력범죄에 '주거침입·퇴거불응죄' 등을 추가하고, 수강·이수명령 병과제도 신설

○ **범정부 민·관 협의체**(여성가족부 주관)를 통해 미투,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**'대책수립-이행-점검' 체계** 마련

< 여성폭력 대응 **범정부 민·관 협의체** 구성·운영 >

성희롱·성폭력	▸'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(12개 부처, 16명 각계 전문가)' 및 '추진 점검단(9개 부처, 16명)'을 통해 직장, 공공, 문화예술계, 이주여성 등 **7개 분야별 대책수립** 및 **이행점검**
디지털 성범죄	▸'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(7개 부처, 13명 각계 전문가)'를 통해 변형카메라 규제-유포차단-수사-처벌-지원 등 **범죄 특성에 맞는 대책수립·이행점검**

* 여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'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'와 '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'를 일원화('18.10월~)

⇒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대책이 현장에서 **실효성 있게 추진**될 수 있도록 **대책이행**과 **점검**을 **강화**

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자녀양육과 자립지원 확대로 안정적 생활에 기여

○ (맞벌이가족)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자녀 돌봄 여건 개선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
지원대상	▸ 중위소득 120% 이하 (지원비율 25~75%)	▸ 중위소득 120% 이하 (지원비율 30~80%)	▸ **중위소득 150% 이하** (지원비율 55~85%, 신규 15~20%)
지원시간	▸ 연 480시간	▸ 연 600시간	▸ **연 720시간**
돌봄수당	▸ 시간당 6,500원	▸ 시간당 7,800원	▸ **시간당 9,650원** **(주휴수당 포함)**

○ (한부모가족) 자녀 아동양육비와 자립·주거지원 확대로 양육부담 완화

① 한부모 자녀 **아동양육비**를 **인상**하고, **지원 연령 확대**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
지원단가	▸ 월 12만원(연 144만원) (청소년 한부모 연 204만원)	▸ 월 13만원(연 156만원) (청소년 한부모 연 216만원)	▸ **월 20만원(연 240만원)** (청소년 한부모 연 420만원)
지원연령	▸ 만 13세 미만	▸ 만 14세 미만	▸ **만 18세 미만**

② **양육비 이행**을 위한 **법·제도 개선**

▸ 상담, 합의, 소송, 이행 모니터링 등 **지원**
* 양육비 이행 : ('15년) 25억원 → ('18.10월) 127억원 (총 380억원)

▸ **채무자 소득·재산 조회 절차 간소화**
*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, 채무자 본인동의 절차 생략 가능

▸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**제재조치 강화**
* 감치처분 기준을 3개월 →1개월로 완화 추진(법무부 협조)

▸ 한시적 양육비 **긴급지원 기간 연장**
* 최장 9개월 → 최장 1년

<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>

…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**딸을 양육하던 이씨**(여)는 12년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으나, **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**으로 **미지급된 양육비보다 1천 4백만원**을 **더 받게 됨** …

③ 한부모가족이 **안정적**으로 **자립**할 수 있도록 **학업**과 **주거** 등 지원

▸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**청소년 한부모 특화시설**(1개소) 운영
▸ **전세임대주택** 및 **공공주택 분양 시** 미혼모·한부모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**지원**('19년 시행)

○ (다문화가족)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확대로 안정적 정착에 기여

▸ 현지 **인권보호 감시체계**를 강화하고, **사전 교육** 확대
* 국제결혼이민관 파견(베트남, '18.4월) 후 불법결혼중개업체 적발('18년 25건)

▸ '**자립지원패키지**'와 '**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**' 확대('17년 101개소 → '18년 152개소)

▸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**이해교육 관련 연수 의무화**(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)

⇒ 맞벌이,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**자녀양육 지원**을 더욱 **확대**하고, **가족 형태**의 **차이**에 따른 **차별적 제도**와 **인식**에 대한 **개선 필요**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**차별과 편견**이 **포용사회 걸림돌**로 작용

□ 성차별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

○ **성평등**에 관한 **이슈**가 남녀 모두의 **공통 관심사**로 **부각**되고, 사회적으로 **중요한 의제**로 대두

* 20대 **여성 81.5%, 남성 71.2%**가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('18.7월, 한국갤럽)

○ 여성의 **경제활동 참여**는 **증가**하고 있지만, 성별임금격차 등 **고용**상 **성별 격차**는 여전

* 경제활동참가율(%) : ('13년) 55.6 → ('17년) 59.0, 성별임금격차(%) : ('13년) 36.6 → ('16년) 36.7

□ 가족 형태의 변화와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대책 필요

○ 한부모·다문화가족 등 **다양한 가족 형태**에 대한 **차별**과 **편견 존재**

○ **이주배경, 취업·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**(NEET)에 대한 **지원 사각지대 발생**

* 이주배경청소년 약 22만 여명, 니트(NEET) 청소년(20~24세) 약 59.7만 여명 등

2. 업무추진 방향

◈ **평등**이 **일상화**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**차별 구조**와 **문화**를 **개선**

정책 비전	**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**
중점 과제	①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②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③ 청소년 보호·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쟁점 20·30 청년이 만드는 성평등 문화 및 정책 혁신 신규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 제고
기대 효과	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2019년 역점 추진과제

1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

◈ **성차별 구조**와 **문화 개선**을 위한 **범정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**를 **강화**하고, **성평등 교육환경**을 **조성**
◈ **여성폭력 대응력 제고**를 위한 **컨트롤타워 기능**을 **강화**하고, **피해자 지원** 확대

□ **개 요**

○ (추진배경) 여성폭력 근절과 성차별 개선 등 **성평등**에 대한 **사회적 요구**가 증가하고 있으며, **성불평등**에 대한 **인식 격차**도 **심화**

<20만명 이상 국민청원('18.9월)>

<'여성이 불평등하다' 의견('18.4월, 여정연)>

○ (주요내용) 성평등 **정책 시스템 구축**과 인식 개선으로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, **여성폭력**에 대한 **신속한 대응**과 **피해자 지원**을 **강화**

□ **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**

① 범정부 성평등 정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

○ (총괄·조정) 직장·학교·문화계 등 **모든 영역**에서 **성평등 제도**와 **문화를 확산**하기 **위해**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**성평등 정책 추진체계** 확립

*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「**성평등 목표**」를 **수립**하고, '**목표 달성 노력도**'를 **평가**
** 부처 주요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평가·개선하고, 주기적으로 이행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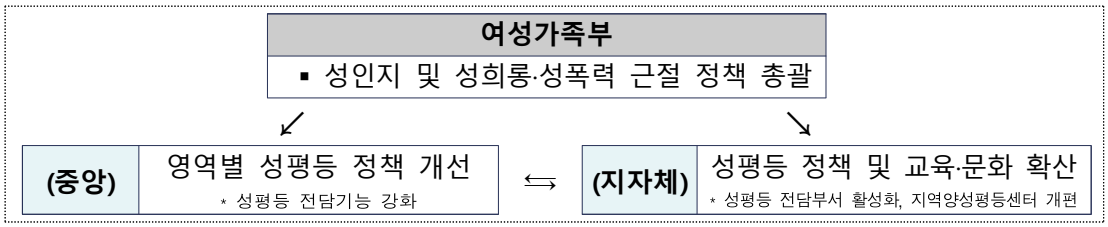

- (중앙) **소관부처**가 책임지고 **성평등 정책**을 **개선**할 수 있도록 **성평등 전담 기능**을 **강화**하고, 부처간 **협업체계**를 마련

- (지자체) 균형 있는 '풀뿌리 성평등 시스템' 확산을 위해 **성평등 전담 부서* 등을 활성화**하고, 성별영향평가센터를 **지역양성평등센터**로 **개편**

* (예) 서울 성평등자문관, 제주 성평등정책관 등

○ **(차별시정) 권리구제 사각지대**를 **해소**하고, **성불평등 개선 창구 역할 개선**을 위해 **성차별·성희롱 조사** 및 **구제** 기능 강화 추진

-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등 신고 및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
- **중대 사안**인 경우 **여가부 조사 개입** 및 **시정명령 근거 마련** 등

②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

○ **(학교·지역) 일상**에서 쉽게 **성평등 교육**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

- 교육부·인권위와 **「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」 활성화** 및 교사를 성평등 교육 멘토로 양성하고, 표준 콘텐츠 개발 추진('19.3월)
- 지역주민·기초의원·기업 대상 **'성평등 아카데미'**(4개소)와 경찰 등 공무원 대상 **'찾아가는 성평등 교육'**('19.4월~) 실시

○ **(미디어·도서) 인터넷 개인방송·게임** 등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**대상**을 **확대**하고, 아동·청소년에 대한 **미디어리터러시 교육** 실시('19.3월)

- 아동들의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위해 **도서 보급과 문화 확산**('19.1월~)

③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대응력 제고

○ **(총괄·조정)**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**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**

- **「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」 운영 활성화**로 **대책의 '수립-이행-점검-환류'** 시스템 확립
- 통합적인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을 위해 **「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*」 수립**

*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로드맵

○ **(전달체계)** 신속하고 통합적 지원을 위해 **신고·지원센터** 등 **개편**

- '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**신고센터' 내실화**로, **접수사건 조치**와 **컨설팅**을 통한 **신속하고 통합적인 처리** 지원

*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**온라인 신고 통합·연계 창구** 마련

< 공공부문 내 사건처리 지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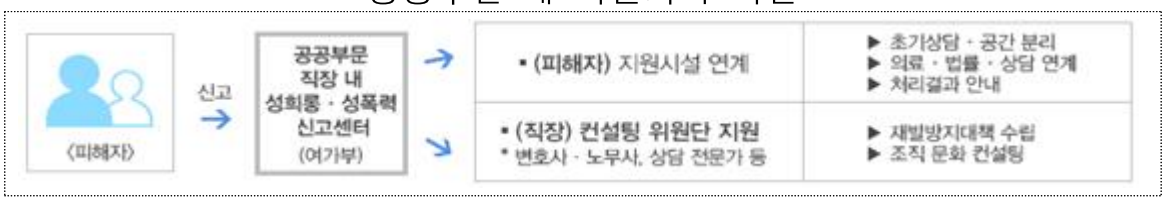

- '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'와 **관계부처**(경찰청·방심위 등)**간 기능 연계**를 통해 **'삭제지원'**을 **효율화***하고, 지원 **대상 확대****

* 방심위 심의처리 시스템 고도화 : 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→ 핫라인 구축

** 지원 대상 :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→ 사이버 성적 괴롭힘, 몸캠 피해 등 포함

④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**(서비스) 피해 특성**과 **피해자 관점**의 **서비스 지원**

구 분	개 선	지원 내용
성폭력·가정폭력	‣ 현장상담원 배치 ‣ 간호사 확충 ‣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	‣ 경찰수사, 법원 재판 등 **동행서비스 지원** 강화 ‣ 증거채취 등 성폭력피해자 **의료지원** 강화 ‣ 가정폭력 피해자의 **자립자활지원** 강화
청소년성매매	‣ 랜덤채팅앱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적용 추진	‣ 온라인상 **청소년성매매** 대응 강화
디지털 성범죄	‣ 지원인력 증원	‣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**삭제** 및 **법률 지원** 강화
스토킹·데이트폭력	‣ 매뉴얼 보급·교육	‣ 유형별 여성폭력 **상담 및 정보제공** 지원 강화

○ **(인프라) 서비스 접근성 제고**를 위해 다양한 **지원인프라 확대**

-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**상담**과 **정보제공 서비스 접근성**을 높이기 위해 **통합상담소 확대**(20→30개소)

- 모국어 상담, 통·번역 지원 등 **이주여성 특화서비스**를 **확대**하기 위해 **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신설**(5개소)

- **장애인 맞춤형 재활·자립지원 기능**을 **강화**하기 위한 **성폭력피해 장애인 공동생활시설** 확대(1→2개소)

⑤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실시

○ **(지원)**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등 **확대** 및 **맞춤형 지원 강화**

* 월지원금 140.4만원(5%↑), 간병비 월평균 136만원(21.4%↑), 건강치료비 월평균 81.9만원(5%↑)

○ **(연구·기념)** '위안부' 관련 **기록사료 집적·분석·아카이브화, 맞춤형 교육·홍보 강화**로 **국가차원**의 **기념사업 활성화**

□ 기대효과

○ **(성차별 해소)** 고용·교육·건강 등 분야별 **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**으로 **성격차 지수**(GGI) **상승***에 기여

* 성격차 지수 상승 : ('18년) 115위 → ('19년) 100위권 진입

* 성평등 인식변화 수준 개선(7점 척도) : ('18년) 0.5점 → ('19년) 1.6점

○ **(안심환경 조성)** 여성폭력 **피해자 지원 확대**로 **불안감 해소**에 기여

* 상담소·보호시설 등 이용자 만족도 개선 : ('18년) 90.5점 → ('19년) 91.4점

2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

◈ **다양한 가족**에 대한 **차별적 제도**와 **인식**을 **개선**
◈ **아이**를 **건강**하게 키울 수 있는 **양육환경**을 **조성**

□ 개 요

○ (추진배경) **가족**의 **형태**가 **다양**해지고, **결혼**과 **가족**에 대한 **가치관**이 **변화**하고 있으나, 가족형태에 따른 **차별**과 **편견**이 **상존**

*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: ('10년) 40.5% → **('18년) 56.4%**
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: ('10년) 20.6% → **('18년) 30.3%**

"동거 부부는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, 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가더라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권한도 없습니다."(동거가족 간담회, '18.11월)

○ (주요내용) **다양한 가족**에 대한 **사회적 수용성**을 높이고, **자녀**들이 **차별받지 않고 성장**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

○ (법·제도) 가족형태의 **다양성**을 **존중**하는 **제도적 기반** 마련

-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「**건강가정기본법**」 **전면 개정 추진**

* (주요내용)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,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

-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**출산·양육**과 **가족관련 차별적 법·제도 정비**

현 행		개 선
▸친부가 자녀인지시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(姓)과 본(本)으로 변경		▸종전의 성(姓)을 그대로 유지하되,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
▸자녀의 성 결정시 부성우선원칙, 혼인 신고시 협의		▸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, 협의시점을 출생 신고시까지 확대
▸출생자를 "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"으로 구분	⇨	▸"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" 구분 표기 개선
▸한부모 육아휴직 이용 저조		▸한부모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휴직급여 개선
▸주거용 재산을 일방이 임의 처분 가능		▸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

- 동거가족·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**통계생산 기반 마련**(통계청)

○ **(전달체계)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**을 위한 **지원 체계 개편**

- 건강가정지원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**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**하여, 아동·여성 등 **가족서비스 관련 중추기관의 역할 수행**

현 행		개 선
▸가족교육, 가족상담, 아이돌봄 중심	⇨	▸방과후 돌봄시설, 새일센터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성·아동·가족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▸지역공동체 활성화, 가족친화 환경조성, 1인 가구 지원 등으로 기능 확장

-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상담·연계하는 **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**('가칭' 가족콜) **구축**('19.8월)

현 행		개 선
▸다문화 상담 1577-1366 ▸양육비 상담 1644-6621(1번) ▸한부모 상담 1644-6621(2번)	⇨	▸(가칭) 가족콜 1577-1366 - 운영 : 365일 24시간 - 상담 : 전화 + 휴대전화 문자(SNS), 온라인

○ **(인식개선)** 가족 다양성에 대한 **인식개선**과 **평등한 가족문화 조성**

- 다양한 가족에 대한 **차별 사례**를 **발굴**하여 **제도 개선**('19.6월~)하고, 다문화·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**인식개선 교육**과 **홍보** 강화

* 공무원, 산부인과 전문의, 교사 등 대상으로 교육,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

- 시민단체, 전문가,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**사회적 논의기구**를 **구성**하여 **다양한 가족의 포용성 제고**를 위한 **공론화 추진**

* (논의내용) 가족범위 확대, 동거가구에 대한 제도적 수용 방안 등

-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 **가족평등지수** 개발 추진

②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

○ **(돌봄지원) 아이돌봄 서비스 질**을 높이고, **자녀 육아부담 완화**

- 아이돌봄 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,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**실시간 신청·대기관리시스템**과 **아이돌봄 서비스 앱 개발**(~'19.12월)

* 실시간 대기 순번, 서비스 연계 예상 시기 등 현황 파악, 실시간 만족도 평가 등

-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**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**을 **추진**하고, **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**와 **연계** 방안 검토

*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관리방안 연구(~'19.12월)

- **아이돌보미**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등 **처우개선**

  * 시간당 급여 : ('18년) 7,800원 → ('19년) 9,650원(돌봄수당 8,400원 + 주휴수당)

- 자녀에 대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,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**공동육아나눔터 확대**

  * 공동육아나눔터 : ('18년) 205개소 → ('19년) 276개소

○ **(양육지원) 미혼모, 한부모가족**에 대한 **실질적 지원 강화**와 **양육부담 완화**

- 시설입소 미혼모·한부모의 **일·학업 등 자립 지원**을 위해 **시설파견 아이돌보미 신규 지원**

  * 120개 시설(아동 약 2,200명)에 아이돌보미 파견

- 미혼모·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한 **매입임대주택 확대**

  * 매입임대주택 : ('18년) 145개소 → ('19년) 159개소

-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

  * (주요내용)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 완화,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등

- 청소년한부모에게 낙인효과 없이 **학습권을 보장**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**위탁교육기관 선택권 확대**

  * 현재 시·도 교육청별로 개별 지정하던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기관을 17개 시·도 교육청을 일괄 지정하여 위탁교육기관 상호 인정 추진

○ **(양육비 이행) 비양육부·모**의 자녀양육에 대한 **책임성**을 **제고**

- 비양육부·모 **주소·근무지 조회절차**를 **개선**하고, 면접교섭 활성화

- **양육비채무자 제재조치 강화방안** 마련

□ 기대효과

○ **(수용성 제고)** 다양한 가족에 대한 **인식개선**으로 **포용사회 토대 마련**

  * 다문화 수용성 지수 : ('15년) 53.95점 → ('21년) 58점

○ **(양육부담 완화) 돌봄·양육지원 확대**로 **일·생활 양립** 및 **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**

  * 맞벌이 가구 대비 아이돌봄 이용가구 비율 : ('18년) 4.2% → ('19년) 6.0%

  *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: ('18년) 7.5만명 → ('19년) 11.3만명

3 청소년 보호 ·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

◈ **지역사회와 연계**한 **청소년 보호·지원 체계**를 **내실화**하고, **맞춤형 지원**을 **확대**
◈ 청소년의 **균형 있는 역량 제고**와 **자립 지원**을 **강화**

□ 개 요

○ **(추진배경)** 학교폭력, 비행 등 **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**가 **공급자 중심, 상호 분절적***으로 이루어지면서 **연계**가 **취약**한 상황

* 드림스타트(12세 이하 취약계층 사례관리 / 229개), CYS-Net(위기청소년 통합지원 / 226개), 학교, 아동보호전문기관(아동학대 예방) 간 상호 연계 부족

* 11~18세(총 439만명)의 17.7%인 약 77만명이 위기청소년, 그 중 약 11만명이 고위험군(폭력, 자살 등 복합적 문제)에 속하는 청소년으로 추산('16년 전국청소년위기실태조사)

○ **(주요내용)** 지역사회에서 학교, 경찰, 아동·청소년 유관기관들의 **협업 체계**를 **강화**하고, 청소년 **역량 제고**를 위한 다양한 **활동 프로그램 확대**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

○ **(CYS-Net 강화)**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**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·운영**과 **사례관리 체계 개선**

* CYS-Net(Community Youth Safety-Net): 지역사회 **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**하여 **위기 청소년**에 대한 **상담·보호·의료·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**하는 **청소년 사회안전망**

< 현 행 >		< 개 선 >
▸ **아동-청소년 정책간의 분절적·차별적 서비스 제공** * 정보연계, 지원 누락, 최초 연계기관에 따라 지원 서비스 격차 발생 ▸ **청소년상담복지센터**('18년 228개소) **중심의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로 지자체 적극적 개입 부족** * 대부분 지자체가 CYS-Net 운영을 민간기관인 상담복지센터에 위탁	➡	▸ **지역사회중심의 아동·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** * CYS-Net과 아동복지 전담부서 연계를 통한 위기 아동·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강화 * 청소년 옴부즈만 시범 배치 (청소년 인권보호,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 등) ▸ 위기청소년 **사례관리 강화** * 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자체·교육청 협업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

○ **(서비스 전문화)** **사례관리**를 통한 **맞춤형 지원** 강화('19.6월)

< 현 행 >		< 개 선 >
▸ 고위기청소년 발굴·집중지원 미흡 ▸ 개별 청소년에 대한 단편적 서비스 ▸ 기관 별 지원으로 사업 역량 분산	➡	▸ **고위기 청소년** 발굴 및 집중 사례관리 ▸ 찾아가는 상담전문가(청소년동반자) 확대 및 **사례관리 역량강화** ▸ 협업과 정보 공유를 위한 **기관 간 연계 강화**

② 청소년의 상황·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

○ (위기청소년)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지원과 회복까지 종합적 지원

< 위기 상황 >	< 지원 서비스 >
● 근로권 침해	▸청소년·고용주 대상 '**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**' 강화 ('18년 600회 → '19년 1,800회) ▸**청소년 근로보호센터 확충**('18년 3개소 → '19년 4개소)
● 가 출	▸청소년을 찾아가는 **현장형 사업 확대** * 거리상담 전문요원 확대('18년 60명 → '19년 90명('19.상) ▸**청소년쉼터 확충**('18년 130개소 → '19년 138개소('19.상))
● 유해환경 노출	▸**신종 유해환경** 대응 '**청소년보호종합대책**' 마련('19~'21) * 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 심의, 사이버범죄(도박, 마약 등) 대응 강화 ▸**미디어과의존** 저연령화 대응 및 치유효과 제고를 위한 **기반 확충** * 저연령(초1~초3) 상담프로그램 보급, 치유시설내 대안활동 공간 마련('19.하)
● 범죄 취약	▸**청소년회복지원시설* 20개소 신규 운영 지원** * 소년법처분(제1호 '보호자 감호위탁') 청소년 상담·주거·학업 등 지원 ▸**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**을 받은 **학교 밖 청소년 교육·상담** 지원 *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10개) 특별 사업(선도·진로지도 등) 추진(검찰청 협의)
● 자살 위험	▸청소년지도자 대상 **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확대** ('18년 629명 → '19년 800명 목표)

○ (다문화·이주배경 청소년) 연령별, 정착기간별 특성을 고려한 **단계별 지원** 강화

- **다문화 청소년**에 대한 **심리·정서 상담**과 학교·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**다문화 이해교육** 실시(교육부 협조)

  *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Wee 센터 등 연계

- **해외거주 한국계 아동 실태**를 파악하고, **인권 보호방안*** 마련

  * 국적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, 자녀 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등

<다문화·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강화>

< 입국 초기 >		< 적응 단계 >		< 진로 지원 >
▸레인보우스쿨 등 한국어 교육 확대(24→32개소) ▸찾아가는 방문교육 운영	➡	▸학교밖 다문화청소년에게 청소년동반자·또래상담 연계 * 또래상담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▸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 청소년 통합 프로그램 연계	➡	▸직업훈련(내일이룸학교) 지원 * 다문화 청소년 전문과정 적극 개설 ▸진로상담교사, 고용센터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

③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역량 제고와 자립지원 강화

○ **(참여 활성화)** 청소년 **정책**과 **지역사회** 활동에 **청소년 참여**를 **지원**

- 청소년정책위원회(여성가족부)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고, **각종 위원회**에 **청소년 참여 확산**을 추진
- **청소년참여기구***, **'e-청소년'****(175만명 가입) 등을 통한 **청소년 참여** 기반 강화

* 청소년특별회의, 청소년참여위원회, 청소년운영위원회 등

** 청소년활동포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추진

○ **(자립역량 제고)**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**진로탐색·개발 기회 확대**

- **니트**(NEET) **청소년***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**청소년자립지원관** 운영('19년 6개소) 등을 통해 **사회진출 기반 마련**

* 취업,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(20~24세)으로 약 59.7만 여명 추산

- 고졸(비진학)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, **초·중등**(의무교육과정) 학업중단 학생의 **정보연계 의무화** 추진

*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 : ('18년) 206개소 → ('19년) 213개소

- 지자체·지방교육청의 청소년 특별지원사업(바우처, 학업비 지원 등)에 **청소년증** 우선 **연계·활용**

* '19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 지급 시범사업에 청소년증 활용(초·중학생 우선 연계)

○ **(주도적 활동 확대)** 청소년 체험·봉사활동을 **자기주도형 활동**으로 **개편**('19.3월~)

- 청소년이 기획·참여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·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
- 청소년 참여형 방과후 아카데미('18년 260개소 → '19년 280개소) 확대 등

□ 기대효과

○ **(건강한 성장)** 위기청소년이 적기에 사회적 **서비스**를 받음으로써 **건강한 사회 구성원**으로 성장

*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중 학업복귀, 사회진입 등 성과인원 비율 : ('18년) 31.5% → ('19년) 32%

*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 치유서비스 지원율 : ('18년) 21.5% → ('19년) 22%

○ **(역량 강화)** 다양한 **참여 활동**과 **자기주도적 체험 확대**로 청소년의 **문제해결 능력과 민주시민역량 제고**에 **기여**

2 쟁점 과제

1 20·30 청년이 만드는 성평등 문화 및 정책 혁신

◈ 청년들이 참여하여 성평등 문화를 혁신하고, 정책을 제안·개선하는 「20·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」를 추진

□ 개요 및 현황

○ (추진배경) 미투 운동, 디지털 성범죄, 채용상 성차별 등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성평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 요구도 다양화

- 반면, 청년 세대 내에서 성별 인식격차가 확대되어 대립양상으로 나타나는 실정

- 청년 간 성별 대립은 우리사회 전체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결방안 모색 필요

① 20대 여성 81.5%, 남성 71.2%가 성별 고정관념, 차별, 혐오 등 성평등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('18년, 한국갤럽)

② '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'에 반대하는 답변이 가장 높은 층은 20대 남성(37.4%)('18년,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)

③ 20대 주요 이슈 지지도(여 : 남, %)('18년 한국갤럽 인식 조사) : 미투 운동(88.8 : 56.4), 혜화역 시위(60.0 : 19.5), 탈코르셋 운동(56.3 : 19.1)

○ (주요내용) 청년 내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, 성평등 의식 수준에 맞는 문화혁신과 정책개선을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 진행하는 토대를 구축

□ 주요 쟁점

○ (청년 소통·참여의 장(場) 부재) 청년들이 성별 갈등 이슈에 대해 함께 대화·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부재한 상황

-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청년세대의 욕구가 강한 만큼 청년이 직접 문화혁신 및 정책개선의 당사자로 참여·활동할 수 있는 창구 필요

*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에 대해 청년 응답자 85.9%가 동의('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)

○ **(정책의 청년관점 반영 한계)** 현재 성평등 정책이 청년층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로 특히, '취업-결혼-출산'에 맞춰진 정책은 **1인 가구, 비혼 공동체** 등 **청년의 현실과 욕구 반영에 한계**

- **청년이 원하는 미래 사회 모델이 변화**하고 있는 만큼 청년의 **성평등 의식**에 **기반**한 **정책** 추진 필요

분 야	현 행		개 선
주 거	▸신혼부부 중심	⇒	▸1인 비혼 가구 포괄
건 강	▸출산 중심		▸안전한 피임, 임신, 출산 등 고려
일자리	▸일·가정 양립		▸청년 중심의 대책 마련

□ 대응 및 향후 조치 계획

○ **(공감·소통채널 구축·운영)** 청년들이 원하는 성평등 과제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고 논의·소통하는 「**20·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**」를 **추진**

- 주요 청년 이슈 조사와 의제 도출 등 **이행로드맵 마련**('19.1월)

< 청년이 꿈꾸는 미래사회 비전 및 주요 이슈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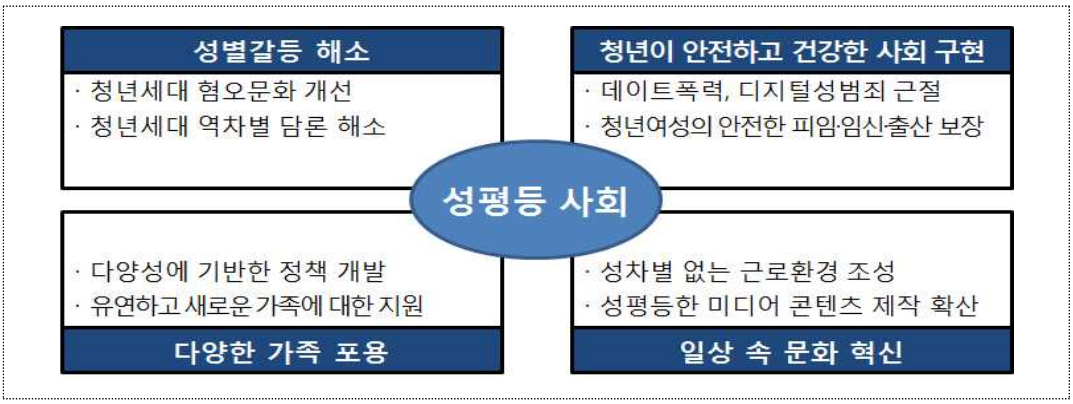

- 지역별·의제별 **청년 모집 구성 및 출범·운영**('19.3월~)

< 「20·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」 운영 체계 >

○ **(문화혁신)** 웹툰, 캠페인, SNS 소통을 통해 **성별 갈등**을 **해소**하고, **20·30이 원하는 정책구현**을 위한 **성평등 문화조성**

- 청년이면 **누구나 참여**할 수 있도록 지역별·의제별 **커뮤니티, 토론장** 운영 진행('19.3월)

< 문화혁신 과제(예시) >

청년 이슈	지역별 · 의제별 커뮤니티 · 토론장 운영 및 의식확산
① 성평등	청년이 꿈꾸는 성평등 세상 이야기
② 안전	디지털 성범죄 아웃!
③ 다양성	다양한 삶에 대한 상상력 키우기
④ 가족	미래의 유연하고 다양한 가족 설계
⑤ 지역	지역 청년을 위한 미래설계 전문가 매칭
⑥ 디지털	성평등 한 디지털 환경 가꾸기
⑦ 교육	청년 여성 기획자 학교
⑧ 일자리	'82년생 김지영'이 원하는 일자리는?
⑨ 주거	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꿈꾸기
⑩ 건강	안전한 피임·임신·출산을 위한 청년여성의 여정

○ **(정책제안·개선) 청년들**의 **제안 정책**에 대한 **개선체계 마련**

- 이슈별 자료수집, 정책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**정책 제안**

- **관련 부처 협의**를 거쳐 부처공동으로 '**미래사회 10대 정책과제**' 마련

* 양성평등위원회 상정하여 정책 이행력 확보

- **분기별 이행점검**을 실시하고, 그 결과는 **차년도 계획 수립**에 반영

< 정책 제안 및 개선 >

3 신규 발굴 과제

1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

◈ **민간기업 여성 대표성 제고**를 위한 **제도 수립·개선** 및 **지원체계** 마련

□ 개 요

○ **(추진배경)** 우리나라의 **여성 경제활동참가율**은 59% 수준('17년)으로, OECD 대비 매우 **낮은 수준**

* '16년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.6%이고 '17년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%p 이상 차이(여성 59.0%, 남성79.3%)

- 여성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뿐만 아니라 임신·출산 등으로 경력유지가 어려우며, 특히 조직 내 **유리천장** 등으로 **여성 임원비율이 매우 저조**

*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낮아지는 M커브가 나타나는 등 경력단절 현상 여전

< 유리천장 지수 중 여성임원 비율('18년, 이코노미스트 발표) >

- 그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 결과, **공공부문**은 **성과**가 나타나고 있으나, **민간부문**에 대한 **조치**는 **미흡**한 실정

*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('13년) 4.4% → ('18년) 6.8%,
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 ('13년) 9.3% → ('18년) 14.3% 등 각 부문 역대 최고치 달성

- 조직 내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는 개인 뿐만 아니라 **기업의 성과*와 국가 경쟁력****과도 직결되므로, **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** 중요

*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높음('16. MSCI),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이 높을수록 기업성과가 높음('18. McKinsey)

**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 시 한국 GDP 10% 증가 전망('17.9월, IMF 라가르드 총재)

○ **(주요내용)** 조직 내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임원을 확대할 수 있는 **제도·지원체계**를 **범정부적**으로 **마련**

□ **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**

○ **(제도 개선)** 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**제도 마련 및 강화**

- **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·발표**('19.10월)와 임원의 성별 현황 **공개 확대** 추진

- **적극적고용개선조치**(Affirmative Action; AA) **제도개선** 권고 추진('19.3월)

○ **(인센티브 발굴) 기업의 자발적 개선**을 위한 **다양한 유인기제 마련**

- **대규모 공적기금** 등의 **투자 기준**에 **여성대표성 항목 반영**('19.7월)

* (사례) 일본 공적연금(GPIF)은 성 다양성 테마지수(MSCI Japan Empowering Women Index)에 연동하여 3,884억엔(약3.8조원, '18.3월 기준)을 투자, 메리츠 더우먼 펀드('18년), SSGA의 Gender diversity index(SHE)('16년)

- 기업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**실증사례 확산**('19.7월)

- 대표성 제고 **이행 우수사례**를 **발굴**하고, **인센티브 제고**(연중)

<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선순환 체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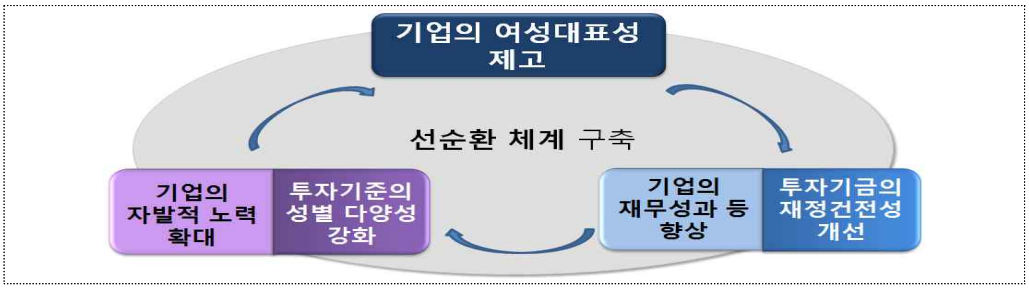

○ **(기업 지원) 선도적 기업을 발굴**하고, 대표성 제고에 의지 있는 기업에 대한 **지원 확대**

- **기업과 협약 체결**을 통해 **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** 도입 추진('19.3월)

* 국내 5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협약 체결 추진

- **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**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등 반영('19.5월)

* 개편된 가족친화인증 기준으로 '19년 800개 기업 이상 인증 심사

- 기업 대상 **컨설팅** 제공과 **CEO·인사담당자 교육,** 성평등 임금·채용 가이드라인 보급·확산('19.3월)

○ **(여성인재 양성)** 고위관리직 진출이 가능한 여성 **후보군 양성**

- **'여성인재 아카데미'**의 중간·고위관리자 교육과정 **개편**('19.3월)

* 기업 현장교육 확대를 위해 기업 강사 양성, 지역거점기관 확대('18년 6개→'19년 10개)

- 직능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 **여성인재풀 확충**(연중)

- **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**('18년 새일센터 15개소 →'19년 30개소 이상)를 통해 재직여성 **경력설계를 지원**하고, 기업 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추진
- 기업의 임원 후보군 양성에 대한 **실태조사**('19.하)

○ **(인식 개선) 성평등 기업 문화의 저변 확대**를 위한 **홍보·캠페인 추진**

- **청년이 뽑은 '일하고 싶은 성평등 기업'** 선정·발표
- 민간단체 등과 협력, 성평등 기업문화를 위한 **인식개선 캠페인** 등

□ 장애요인과 대응방안

○ **(장애요인)**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**기업의 개선 의지가 낮은 상황**이며, **시장이나 고용시스템**에서 이를 **유도할 요인도 부재**

* 국내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이 2/3를 차지(328개, 65.6%, '17년)
국내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: ('14년) 2.3% → ('17년) 3.0%

-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의 **인센티브 제공**과 **인력양성, 성인지적 인식 제고** 등 **다각적 접근**이 필요하나, **관련제도** 및 **정책**이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상황

○ **(대응방안)** 기업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**다양한 인센티브 발굴과 지원방안 마련**을 위한 **범정부적 협력** 추진

- 관계 부처간 **긴밀한 협력체계 구축**을 위한 **실무급 TF**를 **구성·운영**

< 분야별 관련 부처 >

기업의 성별 정보 공개	자본시장의 투자기준 반영	기업 지원과 여성 후보군 양성	사회적 인식개선
고용노동부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여성가족부 등	보건복지부, 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, 여성가족부 등	산업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 등	여성가족부, 기업 등

□ 기대 효과

○ **(여성 대표성 제고)** 기업에 대한 유인기제와 지원체계 마련으로 조직 내 유리천장을 해소하여 **여성의 고위직 진출 지원**과 **경제활동 참여 확대**

* 50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: ('15년) 2.4% → ('17년) 3% → ('19년) 4%
* 30대 여성 고용율 : ('15년) 56.9% → ('17년) 59.4% → ('19년) 60.8%

○ **(경쟁력 강화)** 고용 상 성차별로 인한 **비합리성 해소, 시장 건전성 개선** 등으로 **기업 성과** 제고와 **국가 경쟁력 강화**에 기여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<table>
<tr><th>분야</th><th>주 요 내 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여성
분야</td><td>□ 사회전반의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해소하겠습니다.
ㅇ 직장·학교 등 성평등 제도와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
ㅇ 일상에서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
* 지역주민 대상 성평등 아카데미, 경찰 등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등
ㅇ 「20·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」 운영
*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문화 혁신과 정책 제안·개선하는 참여의 장(場) 마련
ㅇ 민간기업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
* 민간기업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·발표,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추진, 인센티브 발굴 등</td></tr>
<tr><td>□ 여성폭력에 대한 확고한 대응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ㅇ 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 활성화
* 여성폭력 관련 대책의 ‘수립-이행-점검-환류’ 시스템 확립
ㅇ ‘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’ 내실화
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효율화 및 지원대상 확대
ㅇ 유형별 피해자지원시설 및 통합상담소 신설·확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가족
분야</td><td>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.
ㅇ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‘건강가정기본법’ 전면 개정
ㅇ 출산·양육과 가족관련 차별적 법·제도 정비
ㅇ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상담·연계하는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 (‘가칭’ 가족콜) 구축</td></tr>
<tr><td>□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ㅇ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시간 및 대상 확대
* (’18년) 연 600시간, 중위소득 120% 이하(지원비율 30~80%)
→ (’19년) 연 720시간, 중위소득 150% 이하(지원비율 55~85%)
ㅇ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(205개소→276개소)
ㅇ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금액 확대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2018년</th><th>2019년</th></tr>
<tr><td>한부모자녀
아동양육비</td><td>▸만14세 미만, 연156만원
(청소년한부모 연 216만원)</td><td>▸만18세 미만, 연 240만원
(청소년한부모 연 420만원)</td></tr>
</table>
ㅇ 미혼모·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아이돌보미 신규 지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청소년
분야</td><td>□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.
ㅇ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기능 강화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사례관리 실시
ㅇ 청소년 상황·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</td></tr>
<tr><td>□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
ㅇ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산
* 청소년특별회의, 청소년참여위원회(지자체), 청소년운영위원회(청소년수련시설) 등
ㅇ 청소년들의 진로탐색·개발 기회 확대
* 청소년 어울림 마당 및 진로 체험형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</td></tr>
</table>

별 첨	국정과제 추진현황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53 아동·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	**1 학교 밖 청소년 보호·지원 확대** o 학교밖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* ('17년) 202개소 → ('18년) 206개소 o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(8개소) o 내일이룸학교 확대 운영 및 안정적 취업 연계(고용부 협력) 지원 강화 * ('17년) 9개 기관 → ('18년) 16개 기관	o 학교밖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* ('18년)206개소 → ('19년)213개소 o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(9개소) o 내일이룸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운영
	2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o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통합지원 확대 -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확충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* (CYS-Net) ('17년) 224개소→('18년) 226개소 ** (청소년동반자) ('17년) 1,146명→('18년) 1,261명 - 청소년쉼터 확충 및 거리상담 활성화 * 청소년 쉼터 ('17년) 123개소 → ('18년) 130개소 ** 거리상담 전문요원 ('17년) 15개 쉼터 30명 → ('18년) 30개 쉼터 60명 o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- 인터넷·과의존 청소년 맞춤형 치유지원 확대 * 위험군 청소년 치유서비스 지원율 : ('17년) 21.2% → ('18년) 21.5% o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예방·구제를 위한 '근로현장도우미' 확대 * ('17년) 중앙지원본부 1개소 → ('18년) 중앙지원본부 및 지역지원본부 3개소	o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따른 서비스 제공 확대 -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및 고위기청소년 지원역량 강화 * (CYS-Net) ('18년) 226개소 → ('19년) 232개소 ** (청소년동반자) ('18년) 1,261명 → ('19년)1,316명 - 청소년을 찾아가는 현장형 사업 확대 * 청소년쉼터 ('18년) 130개소→ ('19년) 138개소 ** 거리상담 전문요원 ('18년) 60명→ ('19년) 90명 o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- 미디어 과다이용 청소년 지원 및 유해정보 차단 강화(연중) - 인터넷(유튜브 등)을 통한 각종 유해영상 노출 방지 강화 등 o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현장 지원 강화 및 근로보호 인식 제고(연중) - 근로현장도우미 지역지원본부 확대 * ('18년) 3개소 → ('19년) 4개소 - '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' 확대 * ('18년) 600회 → ('19년) 1,800회
	3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 강화 o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 -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한 정책과제 제안을 정부정책으로 추진 -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* ('17년) 250개 → ('18년) 260개 -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 시범 확대 * ('17년) 4개 지역(27개)→('18년) 전국 확대(99개) -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·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기획단 구성·운영(17개시도)	o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 -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한 정책과제 제안을 정부정책으로 추진(계속) -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* ('18년) 260개소 → ('19년) 280개소 - 창의융합.진로체험활동 활성화 - 진로탐색형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o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반 마련 -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참여권 실질적 보장 *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('18.11월)

<table>
<tr>
<td rowspan="3">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</td>
<td>

1 미혼모·부 등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완화

o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

* ('17년) 만 13세 미만, 연144원 → ('18년) 만14세 미만, 연156만원

o 청소년한부모(연 204만원 → 연 216만원)

o 양육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

* 채무자 재산조회 간소화,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 연장(최장 9개월 → 최장 1년)

</td>
<td>

o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

* ('19년) 만 18세 미만, 연240만원

o 청소년한부모('19년 연420만원)

o 미혼모·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아이 돌보미 신규 지원

o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

*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 완화, 기초생활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등

</td>
</tr>
<tr>
<td>

2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

o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

- (인권) 현지 인권보호 감시체계 및 사전 교육 강화

* 국제결혼이민관 파견(베트남, '18.4월) : 불법결혼중개업체 적발(25건, '18년)

- (정착) '자립지원패키지' 확대('17년 101개소 → '18년 152개소)

- (성장) 이중언어 인재 발굴 확대 및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

* 이중언어 인재DB 등록 : ('17년) 590명(19개국) → ('18년) 1,000명(24개국)

**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: ('17년) 107개소 → ('18년) 152개소

</td>
<td>

o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·소통 활성화를 위한 '다문화가족 교류·소통공간(80개소, 생활형 SOC사업)' 추진

- 다문화가족 교류・소통공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확대(8개소)

*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활용

o 국외 다문화가족 자녀양육·성장 지원

- 한·베 귀환여성 및 자녀지원 사업 추진

o 해외거주 한국계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

</td>
</tr>
<tr>
<td>

3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

o 취약·위기가족 지원 확대

* 서비스제공기관 : ('17년) 47개소 → ('18년) 61개소

o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

구분	2017년	2018년
지원 비율	▸ 25~75%	▸ 30~80%
지원 시간	▸ 연 480시간	▸ 연 600시간
돌봄 수당	▸ 시간당 6,500원	▸ 시간당 7,800원

o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

* ('17년) 142개소 → ('18년) 205개소

</td>
<td>

o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전면 개정 추진

- 가족전용상담전화(가족콜) 구축('19.8월)

o 차별을 야기하는 출산·양육 및 가족 관련 제도 정비

o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o 아이돌봄 서비스 질 제고

-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·대기관리 시스템 구축

-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등 처우개선

o 공동육아나눔터 확대

* ('18년) 205개소 → ('19년) 276개소

</td>
</tr>
<tr>
<td rowspan="2">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</td>
<td>

1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

o 「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'18~'22)」 수립

o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 지정·운영 근거 규정 마련 추진

o 성 주류화 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* 마련('18.6월)

* 부처의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적을 정부혁신평가에 반영

</td>
<td>

o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및 분야별 성차별 개선

o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양성평등센터로 확대·개편('19년 4개소 시범)

o 성차별·성희롱 구제 절차 및 제도적 기반 마련('19.12월)

</td>
</tr>
<tr>
<td>

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

o 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('18~'22)」 수립('17.11월) * 「10대 정부혁신과제」로 선정('18.3월)

- 공직, 공공기관, 군·경찰 등 주요 분야 여성 참여율 역대 최고치

* 고위공무원단 6.8%, 본부과장급 16.9%, 등

</td>
<td>

o 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」 2019년 추진계획 수립('19.3월)

o 정부·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 이행점검 (상·하반기)

o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관리

</td>
</tr>
</table>

	ㅇ 정부위원회 40.7%, 광역자치단체위원회 42.2% 달성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대폭 확대	ㅇ 민간기업 여성 대표성 제고 - 기업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·발표 -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추진 -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등
	3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ㅇ 문화·예술과 연계한 성평등 체감 10대 프로젝트 전개 * (대중음악) 성평등 음원 개발 프로젝트('18.4월~), (영화) 서울국제여성영화제, 토크콘서트 '#With you' 개최('18.6.4) 등 ㅇ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(5종)	ㅇ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확대 * (학교) 「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」 강화 * (지역) '성평등 아카데미' 운영('19년 4개소) ㅇ 인터넷 개인방송·게임 등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 확대 ㅇ 아동·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('19.6월) ㅇ 20·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 추진('19.3월)
	4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ㅇ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대응 강화 - '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' 및 점검단 구성·운영('18.3월~) - 「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」 설치·운영('18.3월~) 및 특별점검('18.4월~12월) ㅇ 중장기 여성폭력근절정책 추진기반 마련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 방지 전담기구 설치근거마련('18.11월) 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정('18.12월)	ㅇ 중장기 여성폭력근절정책 추진기반 마련 - 「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」 수립 ㅇ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한 분야별 신고센터 연계('19.1월~)
	5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 확대 ㅇ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-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('18.3월) - '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' 운영('18.4월~) ㅇ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방지 대책 마련('18.2월) -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·일시보호 등 제공('18.2월~) 및 상담매뉴얼 개발 ㅇ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* 여성폭력 통합상담소(10개소→20개소), 해바라기센터(38개소→39개소),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시설(294호→314호),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신설(1개소) ㅇ 실시간 상담(채팅·카카오톡)이 가능한 '여성폭력 사이버 상담' 활성화 * (실적) : ('17.9월) 3,829건 → ('18.9월) 7,644건 ㅇ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('18.11월) ㅇ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·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임위 의결('18.2월)	ㅇ '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' 지원 서비스 강화 * 지원인력 확충('18년 16명 → '19년 26명) ㅇ 피해자지원시설 및 통합상담소 신설·확대 * 성폭력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(1→2개소),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(5개소) * 통합상담소(20개소 → 30개소) ㅇ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확대 (83개소→98개소) -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(1인당 500만원 내외) 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ㅇ 성매매 유입 아동·청소년을 피해아동·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지원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
	6 여성 건강과 몸에 대한 권리 보장 강화 ㅇ '건강증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' 추진('18.6~12월) ㅇ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추진 ㅇ 학교밖청소년 산부인과(자궁경부세포검사) 선택검진 가능	ㅇ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* (현행) 현물지원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→ (개선) 바우처 지원, 방문신청 및 온라인·모바일 신청 가능
	7 일본군 '위안부'피해자 관련 조사·연구·기념 사업의 체계적 수행 ㅇ 「일본군'위안부' 문제 연구소」 발족('18.8.10.) ㅇ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기림의 날(8.14) 정부 행사 및 추모비 제막식 개최('18.8.14, 국립 망향의 동산)	ㅇ 「일본군'위안부' 문제 연구소」 사업 지속 추진(연중) ㅇ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 추진('19.8.14) * '19년 3·1운동, 임정 100주년 계기 행사 내실화